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78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금지(안 제11조의2제10항 등)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충전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 ⑨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⑪ (생략)	⑪·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12항----- ----- ----- -----.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충전

②·③ (생략)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과 관련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방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기차 차량등록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9,918대에서 2023년 543,900대로 약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전기차 1만대당 화재 건수는 2019년 0.33건에서 2023년 1.3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및 화재 현황 (2019년~2023년)

구 분	차량등록 건수 (%)		차량화재 건수 (1만대당 건수)	
	전체	전기차	내연차	전기차
2019년	23,677,366	<u>89,918(0.38%)</u>	4,707 (1.98)	<u>3 (0.33)</u>
2020년	24,365,979	<u>134,962(0.55%)</u>	4,547 (1.87)	<u>11 (0.82)</u>
2021년	24,911,101	<u>231,443(0.93%)</u>	4,506 (1.83)	<u>24 (1.04)</u>
2022년	25,503,078	<u>389,855(1.53%)</u>	4,625 (1.84)	<u>43 (1.12)</u>
2023년	25,949,201	<u>543,900(2.10%)</u>	4,724 (1.86)	<u>72 (1.32)</u>

※ 자료: 소방청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시점 현황을 살펴보면,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 139건 중 19%인 26건으로 나타나 ‘운행중(46%)’과 ‘주차중(26%)’ 항목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 발생 시점 현황 (2021년~2023년)

구분	2021	2022	2023	총계(%)
운행중	12	22	34	68(49%)
주차중	6	9	21	36(26%)
충전중	4	9	13	26(19%)
정차중	1	1	3	5(4%)
그 외*	1	2	1	4(3%)
총 계	24	43	72	139(100%)

* 주차중, 견인중 및 충전중일 때 다른 화재로부터 연소확대

※ 자료: 소방청

또한, 전국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¹⁾ 마련을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소 주변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 때²⁾,

개정안과 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1) ▲젖은 손으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2)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LPG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 도모라는 것을 고려할 때,

흡연 금지를 통한 화재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규정하기보다는 화재 예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6